

직무능력 성취도 평가 규정

제정 2016. 6. 23. 전문개정 2017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의 직무능력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를 위한 인증과목의 선정) ①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전체 개설된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
② 직무능력인증을 위한 과목의 범위는 전공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과 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 등 NCS 10개 분야의 직업기초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한다.

③ 과목별 직무능력평가는 평가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시한다.

제3조(평가시기) ① 학생 개인별 학생 개인별 수행준거 평가는 담당교수가 실시하며, 학기 종료 전 해당 교과목명세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평가한다.

② 직무능력에 대한 종합적 성취도 평가는 모든 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도 2학기 종료 후에 누적하여 산출한다.

제4조(평가체제) ① 전공직무능력으로 평가한다.

② 2회 이상의 직무능력 평가로 교과목 평가체제를 구성한다.

③ 직무능력은 학생 별로 관리하며 직무별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과목 이수 학기 중 향상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가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갈음한다.

④ 직무능력성취도 인증 및 평가는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제5조(평가방법) ① 직무능력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은 제2조의 ①항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직무능력교과목의 최소성적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 만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학생은 해당 향상심화 교육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6조(성취도 산출 절차) ① 직무별 직무능력성취도는 능력단위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평균하여 산출한다.

② 학과별 한학기의 직무능력성취도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직무능력성취도를 평균하여 산출한다.

③ 대학 직무능력성취도는 학과별 직무능력성취도를 평균하여 산출한다.

제7조(평가대상)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대상은 본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8조(평가의 활용) ① 학생 개인의 직무별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결과는 담당교수에 의해 학기별로 점검 및 관리되어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결과는 학과 차원의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기초

자료로 활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특례) 이 규정은 2017년 2월 졸업자에 한해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인 증 서

학 과 명 :

생년월일 :

성 명 :

[직무명 : 0000]

구분	능력단위(DUTY)
직업기초	
직무능력	

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동안 『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』
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인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대 경 대 학 교 총 장